

이 보도자료는 배포 후 2020. 3. 20.(금) 오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이방현

전화 054-250-4398 / 팩스 054-250-4348

보도자료

2020. 3. 20.(금)

제목

「코로나19 관련 민생침해 보건 범죄」 엄정 대응

- 미인증 마스크 미신고 대량 판매사범 등 구속 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(지청장 박재익)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임
- 우리청은 전일(3. 19.) 미인증 마스크 미신고 대량 판매사범 2명,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사범 2명 등 경찰에서 송치된 총 4명을 구속 기소하였음
-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,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

1

코로나19 대응단 구성 및 대응체계 구축

- 포항지청은 기존에 편성된 코로나19 대응팀을 「코로나19 대응단」(단장 지청장)으로 격상하고, 대응단 내 상황대응팀 및 행정지원팀을 두고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임
- 관내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망 구축하고,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·보건용품 판매사기 등 관련 범죄에 신속 대응하는 등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음

2

코로나19 관련 범죄 엄정 대처

① 미인증 마스크 미신고 대량 판매사범 2명 구속 기소

○ 피고인

- A○○(45세, 화장품 유통업)
- B○○(39세, 무직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[약사법위반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]

- (A○○) '20. 2. 21. ~ 3. 6. 약사법상 의무표기사항 미기재한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약 27만 6,500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6명에게 합계 5억 355만원에 판매하고, 마스크 7,050개를 보관
- (B○○) '20. 2. 27. ~ 3. 1. 약사법상 의무표기사항 미기재한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약 6만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3명에게 합계 1억 1,550만원에 판매

○ 수사경과

- '20. 3. 1. 마스크 매점매석 제보에 따라 수사 착수(경북지방경찰청)
- '20. 3. 8. ~ 3. 9. 피고인들 구속
- '20. 3. 13. 피고인들 구속 송치
- '20. 3. 19. 구속 기소

※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며, 창고에 보관 중인 약 7,000장의 미인증 마스크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폐기명령 등 행정처분 요청 예정

②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사범 2명 구속 기소

○ 피고인

- C○○(33세, 무직)
- D○○(30세, 무직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(C○○) '20. 2. 9.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1,500만원 상당 편취 [사기]
- (D○○) '20. 2. 23.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5명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,580만원 상당 편취하고, '20. 1.경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360회에 걸쳐 합계 9,750만원 상당 도박 [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(도박등)]

○ 수사 경과

- '20. 2. 19. 피고인 C○○에 대한 진정서 접수(포항남부서), 3. 9. 구속
- '20. 2. 27. 피고인 D○○에 대한 진정서 접수(포항북부서), 3. 5. 구속
- '20. 3. 12. 피고인들 각 구속 송치
- '20. 3. 19. 각 구속 기소

3

의의 및 향후 계획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불안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민생침해 보건의 범죄에 대하여 **엄정 처리하였음**
- 포항지청은 향후에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**신속·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겠음** ☑